

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59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1999. 11. 19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	: 1999. 11. 19	
다. 상 정 일 자	: 1999. 11. 26	산업건설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	: 1999. 11. 27	산업건설위원회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
 - '98 ~ '99 총 기금조성액 : 33,478,640원
 - '98 ~ '99 법정 기금조성액 : 31,961,000원
 - '98 ~ '99 기금 이자수입 : 1,517,640원
 - 2000년 법정기금 예산액 : 16,537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있음.

- 본 기금은 1998년부터 적립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총액이 50,015,640원으로서 2000년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